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-18호

「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

1. 개정 이유

"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"('16. 7. 4. 발표)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, 법제처의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정비 권고('16. 8. 26.)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□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에 BB등급 법인을 추가 (규정안 제2조제1호)
- □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삭제하고, 금감원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

(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3항)

3. 기타 참고사항

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fsc.go.kr) '지식마당-법령정보-고시/공고/훈령'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